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795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2018. 9. 13.

판결 선고2018. 10. 11.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219,209원 및 그중 3,012,836,480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피고 A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2016. 5. 24. 21억 6,000만 원, 2016. 7. 5. 6억 3,000만 원, 2016. 8. 17. 2억 25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5. 26. 24억 원, 2016. 7. 5. 7억 원, 2016. 8. 17. 2억 2,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A가 2017. 5. 8.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012,836,4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 가) 피고 A는 2015. 8. 24. 자기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2017.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7. 4. 1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1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 의사로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거래가격인 2억 7,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2억 원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2억 7,000만 원인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인데 그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31,521,938,929원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이 법원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진

판사민경현

판사윤정운

별지